

의안번호	제 903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5년 4월 1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0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5년 4월 1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주요현안 집중 대응을 위해 부지사의 사무분장이 변경되었음. 사무분장에 따라 충청북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개정(안 제7조)
 - －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“행정부지사”에서 “장사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변경

3. 의안전문 : 불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임

5. 관계법령 발체 : 불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장사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)	제7조(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관계공무원, 학식과 덕망이 있고 문화재등에 조예가 깊은 자, 관련기관·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②-----장서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발췌

□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·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·보수를 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－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

- ①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, 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·첨부하여야 한다.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○ 사 유

- － 「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부서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, 주요현안 추진에 집중 대응하기 위한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*을 반영
 - * 경제·복지·과학·인구·청년·공향·국회 등 업무
- －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아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함

○ 작성자

- －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장 조 성 돈